

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법인 또는 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생년월일	
	주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	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.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1부 3.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1부	수수료 없음
국토지리정보원장 확인사항	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. 국가기술자격증(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하며, 국토지리정보원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